

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 조성을 위한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060
------	------

2025. 9. 9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8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3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】
 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 9. 9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민생노동국장 이해선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취약 소상공인 “보호”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“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”를 조성 중임

나.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근거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-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4항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출자개요

- 추진방향
 -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
 -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
-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- 출자사업
 -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
 -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
 -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
 -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
- '26년 펀드 출자 계획(안) : 7억원
 - ※ 연도별 출자액(안) : 7억원('25년) → 7억원('26년) → 8억원('27년) → 8억원('28년)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,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
- 기존의 기술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, 소상공인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큼
-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“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사업”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함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출자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개요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,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·운용하고,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승계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.

<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분류 >

계 정	용 도 ²⁾	소 관 부 서
융 자 계 정	·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·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·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·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·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	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
투 자 계 정	·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	경 제 실 창 업 정 책 과
사회적경제 계 정	·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· 사회,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	민 생 노 동 국 공 정 경 제 과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

-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(이하 “투자계정”)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됨.
- 다만 현재 투자계정을 통해 조성된 펀드는 바이오, 인공지능 등 벤처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투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출자액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를 조성하기로 함.

<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·운용 개요 >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▶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 ▶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 ▶ 자금구성 : 시 출자금 + 운용사(GP) + 기타 자금 등 ▶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도별 투자계획 : 25년(7억) / 26년(7억) / 27년(8억) / 28년(8억) ▶ 기준수익률 : 3% 이상(모태펀드 소상공인 라이콘 분야와 동일) ▶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|
|---|

-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운용되고, 연 3%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4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4년간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,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초기 출자액 7억원이 편성됨.
- 그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특성과 성장 경로에 부합하는 ‘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’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.

- 참고로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에서도 2024년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‘라이콘 (LICORN)³⁾ 펀드’를 처음으로 조성하여 생활문화 기반의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한 발굴과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.

3. 출자의 적정성 검토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⁴⁾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⁵⁾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,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 조성을 위해 투자계정에 출자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- 동 펀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,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동 펀드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5년 출자 예정액 7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가 의결⁶⁾(2025. 6. 27.)

3) Lifestyle & Local Innovation uniCORN

4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5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6) ‘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’(의안번호 2839)

하였으며, 동 동의안은 2026년 출자 예정액 7억원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는 내용임.

- 현재 펀드 전반을 관리하는 운용사로 주식회사 크립톤이 선정되었으며, 조합원 모집과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펀드 운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조합원 모집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2025년 출자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‘관리 인력의 잦은 변동’, ‘경제실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’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,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조직·인력 관리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

의 안 변 호	306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취약 소상공인 “보호”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“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”를 조성 중임
- 나.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근거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-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4항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출자개요

○ 추진방향

-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
-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

-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- 출자사업
 -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
 -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
 -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
 -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

○ '26년 펀드 출자 계획(안) : 7억원

※ 연도별 출자액(안) : 7억원('25년) → 7억원('26년)→ 8억원('27년)→ 8억원('28년)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,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
- 기존의 기술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, 소상공인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큼
-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“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사업”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중소기업기금(투자계정) 운용계획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박진(☎2133-5133)